

20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

◇ 도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■ 평가개요

- 평가대상 : 23개 기관(출연기관 20, 보조단체 3)
 - ※ 대구경북연구원(정책기획관실 주관, 평가결과 : A) 포함
- 시행기간 : 2021. 4 ~ 9월
- 대상연도 : 2020년
- 평가기관 : (주)가치경영원 위탁시행
- 평가지표
 - 기관평가 : 3대부문(지속가능경영, 경영성과, 사회적가치)
 - 기관장평가 : 2대부문(책임경영, 성과과제)

■ 기관 평가결과

- (S등급) 3개
 - 콘텐츠진흥원, 한국국학진흥원, 행복재단
- (A등급) 6개
 - 경제진흥원,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, 문화재단, 여성정책개발원, 테크노파크,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
- (B등급) 11개
 - 교통문화연수원, 독도재단, 문화엑스포, 바이오산업연구원, 새마을세계화재단, 신용보증재단, 인재평생교육진흥원, 장애인체육회, 종합자원봉사센터, 청소년육성재단, 환경연수원
- (C등급) 2개
 - 독립운동기념관, 환동해산업연구원

■ 기관장 평가결과

- (85점 이상) 12개
 - 경제진흥원,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, 문화재단, 신용보증재단, 여성정책개발원, 장애인체육회, 콘텐츠진흥원, 테크노파크,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, 한국국학진흥원, 행복재단, 환경연수원
- (80점 이상) 10개
 - 교통문화연수원, 독도재단, 독립운동기념관, 문화엑스포, 바이오산업연구원, 새마을세계화재단, 인재평생교육진흥원, 종합자원봉사센터, 청소년육성재단, 환동해산업연구원

■ 평가결과 활용

-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시 기초자료 활용
 -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
 -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 ('21.9.10. 운영심의위원회 결정)
- ※ 사업연도 중 기관장 및 임·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(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용)

① 기관·단체장

| 구 분 | S | A | B | C | D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|
| 지급률 | 220% | 170% | 120% | 70% | 0% |

※ 기관·단체장 : 기본연봉 기준(기본연봉 × 1/12) × 지급률

② 임·직원

| 구 분 | S | A | B | C | D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|
| 지급률 | 180% | 150% | 120% | 70% | 0% |

- (적용대상)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
- (지급시기)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·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
- (지급액) 연봉(보수)월액 x 지급률
 - ※ 연봉월액 = 기본연봉 총액/근무월수
 - 보수월액 = 총보수액(기본급 총액 + 비속인적 수당 총액)/근무월수
 - ※ 연봉(보수)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0년도 기준으로 산정
- (지급총액)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범위에서 성과급 지급총액(ceiling) 결정
 - ※ 총액산정 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을 반영
- (차등지급)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(ceiling)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지급
 - ※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·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, 개인별 근무평정은 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실시
- (등급별 인원 배분) 최고·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% 이상으로 하고, 등급별 인원 비율을 최고는 20% 이내, 최저는 10% 이상으로 강제 배분
 - ※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- 연도 중 입·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(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)
 - '21년 입사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
 - '21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
 - (가) 퇴직일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('20. 1. 1. ~'21. 퇴직일)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
 - (나)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, 차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('21. 1. 1. ~'21. 퇴직일)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